## 4. 선정의 취소 및 재선정



## 가. 필요적 취소사유

헌법재판소는 ①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② 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③ 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국선 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).

## 나. 임의적 취소사유

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(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).

## 다. 재선정 및 통지

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이외의 사유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(헌법 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).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청 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 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).